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7-21

부 산 고 등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누244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
제 1 심 판 결	부산지방법원 2015. 12. 3. 선고 2015구합1664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5. 18.
판 결 선 고	2016. 6. 15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4. 3. 17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,129,370원, 지방교육세 2,712,930원, 농어촌특별세 1,356,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7-21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, 다음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

원고의 추가 주장의 요지는 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의 승소가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이유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2002년에 1,3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,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들 취득가액으로 위 1,3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201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, ② 원고가 비용 문제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경료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취득세 미납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압류를 한 것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이며, ③ 가사 원고의 다른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산금이라도 감면을 바란다는 것이다.

그러나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는 이상, 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손지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7-21

판사 박준용

판사 문상배